

# 2025년 해외민간네트워크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민간거점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줄 전문 해외마케팅·컨설팅 회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8월 21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 I. 해외민간네트워크 개요

- (개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해외마케팅·컨설팅 역량을 보유한 민간 컨설팅 기업을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운영
  - \* 2024년 36개국 162개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정·운영 중
- (역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해외민간거점으로 해외지사화사업 등 해외진출지원사업의 수행사 및 중소기업 해외 진출 플랫폼으로 활동
  - (해외지사화사업) 중소기업의 해외 지사역할을 대행하며 중소기업의 현지진출에 필요한 전문서비스 제공
  - (수출바우처사업) 중소기업 수요에 기반(서비스, 수행기관 자율 선택)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
  - (해외수출마케팅)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시장개척 및 수출활동 지원
- ☞ 이 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해외조직(GBC, KSC 등)과의 연계 지원 활동 및 글로벌 진출 사업 참여 가능

## 2. 신청자격 및 모집분야

### □ 신청 자격

구 분		기본 신청 요건
업 력 3 년	국 내 소 재 기 업	① 최근 2개년 <b>평균 매출액* 5억원 이상</b> * '22년, '23년 국세청 신고 표준재무제표 매출액 기준 ② 최근 2년간*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b>컨설팅 실적 5건 이상</b> * '22년 7월~'24년 6월 계약 실적 ③ 컨설팅 전담 <b>정규인력 3명 이상</b> 보유 기업(대표자 포함) ④ <b>해외 현지법인(지사) 보유</b> 기업(필수) - 미보유 기업의 경우, 현지 업무제휴 파트너와 2년 이상 협력체계 구축 실적 보유
	해 외 소 재 기 업	① 최근 2개년 <b>평균 매출액* USD 10만불 이상</b> * '22년, '23년 국세청 신고 표준재무제표 매출액 기준 ② 최근 2년간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b>컨설팅 실적 5건 이상</b> * '22년 7월~'24년 6월 계약 실적 ③ 컨설팅 전담 <b>정규인력 3명 이상</b> 보유 기업(대표자 포함) ④ 한국 지사 및 업무제휴 파트너 보유기업 우대
업 력 3 년	국 내 소 재 기 업	① 최근 3개년 이내 <b>컨설팅 실적 20건* 이상</b> - 대표자 개인 컨설팅 수행실적도 인정 * 여러 기업을 1개의 컨설팅(프로그램)으로 수행했다면 1건으로 인정 ② 컨설팅 전담 <b>정규인력 2명 이상</b> 보유 기업(대표자 포함) ③ 컨설팅을 통해 발생한 <b>매출(수출) 또는 투자금액 2.5억원 이상</b> - 컨설팅 대상 기업에서 컨설팅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만 인정 ④ <b>해외 현지법인(지사) 보유</b> 기업(필수) - 미보유 기업의 경우, 현지 업무제휴 파트너와 1년 이상 협력체계 구축 실적 보유
	해 외 소 재 기 업	① 최근 3개년 이내 <b>컨설팅 실적 20건* 이상</b> - 대표자 개인 컨설팅 수행실적도 인정 * 여러 기업을 1개의 컨설팅(프로그램)으로 수행했다면 1건으로 인정 ② 컨설팅 전담 <b>정규인력 2명 이상</b> 보유 기업(대표자 포함) ③ 컨설팅을 통해 발생한 <b>매출(수출) 또는 투자금액 USD 5만불 이상</b> - 컨설팅 대상 기업에서 컨설팅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만 인정 ④ 한국 지사 및 업무제휴 파트너 보유기업 우대

\* 업력 산정 기준 : 모집공고 시작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일의 만년으로 함

## □ 신청 제외 대상

- ① 휴·폐업 중인 기업
- ② 법인 및 대표자가 국세·지방세 체납상태인 기업
- ③ 해외민간네트워크로 활동하면서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해외민간네트워크 운영지침 제 14조(자격박탈)’에 의거 재지정 제외된 기업
- ④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⑤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⑥ OKTA(세계한인무역협회)의 글로벌마케터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신청 제외 대상 중 ⑤번은 국내 소재 기업만 적용

## □ 모집 분야

분 야	지원내용
수출지원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현지 마케팅 세일즈 활동, 홍보대행, 수출계약지원, 대금회수, 현지업무대행, 온라인 상담회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비스가 가능한 기업
해외유통망 진출	해외 유통망 상품 소싱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 현지 온라인 대형 유통망, 및 오프라인 매장 등에 입점 지원 서비스가 가능한 기업
품목별 타겟 진출	산업별 특정 품목에 특화되어 있으며, 온·오프라인 연계한 채널을 활용한 판매·판로개척 서비스가 가능한 기업
기술수출 (제휴)	기술수출 및 제휴(기술이전, 협력, 라이선싱 등) 파트너 알선 및 현지 지원이 가능한 기업
인큐베이팅 서비스	생산설비 등 중장기적인 기술마케팅 및 유지·관리가 필요한 업종 중심으로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업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해외 VC 연계 지원, 현지 네트워크 구축, 제품 현지화 멘토링 등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업
조달진출	국제기구 및 국가별 국제 조달시장에 직접 진출하거나, 공공조달 벤더와 거래알선, 입찰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현지 투자지원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투자타당성 검토, 파트너 발굴, M&A 지원, 현지법인(Joint Venture) 설립지원 등이 가능한 기업
데이터 사이언스 컨설팅	UX(사용자경험) 활용 디자인, 마케팅 전략 수립 및 ICT 컨설팅(머신러닝, 원격 AS 등) 제공 등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수출 지원 컨설팅이 가능한 기업

## □ 우대 사항

- (가점 사항) 기업 수요가 많으나 해외민간네트워크 부재 또는 23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 중기수출 증가, 성과 우수지역 등

< 권역별 선발우대 지역(국가) >

권역	지역(국가)
유럽, 북미	이탈리아, 체코, 미국
동남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중국	중국, 홍콩, 대만
서남아	인도
중남미	멕시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CIS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 선발우대 서비스 및 업종 >

권역	내용
지원 서비스	기술수출, 데이터 사이언스 컨설팅, 현지투자지원
업종	생활용품, 기계금속, 의료기기

## 3.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4. 8. 21(수) ~ 9. 25(수) 18:00 (※KST(GMT+9) 기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신청서 및 부가서류 스캔본 제출)이나, 온라인 신청에 애로가 있는 기업 Email 신청\* 허용
  - \* 중진공 유선확인 요청 필요. 확인 불가 시 접수처리 불가
  - (온라인 접수) <http://kosme-jisahwa.com> (접수기간 중에만 운영)
  - (E-mail 접수) [singo@kosmes.or.kr](mailto:singo@kosmes.or.kr) (메일 신청 시 유선확인 필수)
- (제출서류) 첨부1 필수 제출서류 참고
  - \* 해외발급서류는 국문 번역문서 제출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영어 번역 허용
  - \*\* 서류 미제출 시 별도 보완요청 없이 항목 최하점 부여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협력처 (☎ 055-751-9684/9680/9679)

○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추가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선정통보 후에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민간네트워크 운영지침」,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지사화사업 수행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과 그 시행령,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허위자료 제출 시에는 언제든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선정된 기업은 당해 연도 해외지사화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사업신청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해외지사화사업 등 관련 사업 참여기업의 특수관계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은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언제라도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정자격이 박탈되며, 사업비 환수·사업참여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추진일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신청접수	서류심사	실태조사	심의위원회	최종통보
'24.8.21(수) ~ 9.25(수)	'24.9.26(목) ~ 10.16(화)	'24.10.21(월) ~ 11.20(수)	'24.12월 초	'24.12월 중

※ 참여신청 현황 및 평가절차에 따라 일정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5.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정 절차 및 기준

- ① 서류심사 : 지원 자격, 필수서류 구비, 금융 불량 여부 등 기본요건 검토
- ② 실태조사 : 심사 평가 기준에 의한 실태조사 실시

< 2차 심사 평가 기준-업력 3년 이상 >

부 문	항 목	배 점	세 부 내 용
I. 경영관리 능력	1. 업력 및 대표자 경력	5	기업업력 및 대표자 경력
	2. 재무 평가	5	매출액 규모
	3. 신용평가	10	신용평가 등급
	소 계	20	
II. 컨설팅 수행기반	1. 컨설팅 인력 전문성	10	컨설팅 수행인력 전문성
	2. 컨설팅 수행 준비도	5	프로젝트 수행 계획의 적절성
	3. 컨설팅 운영체계	5	자체 노하우 및 운영시스템
	4. 컨설팅 조직 기반	10	국내외 컨설팅 조직기반 역량
	소 계	30	
III. 컨설팅 제공능력	1. 컨설팅 수행 실적	10	최근 2년간 컨설팅 수행실적
	2. 컨설팅 수행 성과	20	최근 2년간 컨설팅 수행성과
	3. 프로젝트 통제 및 사후관리	20	보고체계/정보보안 절차 등
	소 계	50	
합 계		100	
IV. 가점	우대사항의 지역	10	가점사항 국가 참조

< 2차 심사 평가 기준-업력 3년 미만 >

부 문	항 목	배 점	세 부 내 용
I. 경영관리 능력	1. 업력 및 대표자 경력	5	기업업력 및 대표자 경력
	2. 경영안정성	5	경영관리 및 경영기반
	3. 신용평가	10	신용평가 등급
	소 계	20	
II. 컨설팅 수행기반	1. 컨설팅 인력 전문성	10	컨설팅 수행인력 전문성
	2. 컨설팅 수행 준비도	5	프로젝트 수행 계획의 적절성
	3. 컨설팅 운영체계	5	자체 노하우 및 운영시스템
	4. 컨설팅 조직 기반	10	국내외 컨설팅 조직기반 역량
	소 계	30	
III. 컨설팅 제공능력	1. 컨설팅 수행 실적	10	최근 2년간 컨설팅 수행실적
	2. 컨설팅 수행 성과	20	최근 2년간 컨설팅 수행성과
	3. 프로젝트 통제 및 사후관리	20	보고체계/정보보안 절차 등
	소 계	50	
합 계		100	
IV. 가점	우대사항의 지역	10	가점사항 국가 참조

- ③ 심의위원회 : 60점 이상 기업 중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 의결

## 별첨

## 표준환율 적용

- 달러 환율(USD) 적용이 어려울 경우 한국은행 『대원화환율의 평균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계산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주소 : [ecos.bok.or.kr/#/Short/83ebd5](http://ecos.bok.or.kr/#/Short/83ebd5)

(단위 : 원)

국가	현지 통화 (단위)	2022년	2023년
미국	달러 (USD)	1291.95	1305.41
중국	위안 (CNY)	191.57	184.22
일본	엔(100엔) (JPY)	983.44	931.24
유로존(유럽)	유로 (EUR)	1357.38	1412.36
영국	파운드 (GBP)	1592.33	1624.19
캐나다	캐나다달러 (CAD)	991.82	967.38
스위스	스위스프랑 (CHF)	1352.05	1454.1
호주	호주달러 (AUD)	895.43	867.29
뉴질랜드	뉴질랜드달러 (NZD)	818.96	801.56
홍콩	홍콩달러 (HKD)	164.98	166.75
대만	대만달러 (TWD)	43.34	41.92
몽골	투그릭 (MNT)	0.41	0.38
카자흐스탄	텡게 (KZT)	2.8	2.86
태국	바트 (THB)	36.83	37.55
싱가포르	싱가포르달러 (SGD)	936.47	972.16
인도네시아	루피아(100루피아) (IDR)	8.69	8.57
말레이시아	링깃 (MYR)	293.34	286.43
필리핀	필리핀 페소 (PHP)	23.69	23.47
베트남	동(100동) (VND)	5.51	5.48
브루나이	브루나이달러 (BND)	936.47	972.16
인도	인도루피 (INR)	16.43	15.81
파키스탄	파키스탄루피 (PKR)	6.33	4.68
방글라데시	타카 (BDT)	13.83	12.08
멕시코	멕시코 페소 (MXN)	64.3	73.7
브라질	헤알 (BRL)	250.46	261.68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페소 (ARS)	10.06	5
스웨덴	크로나 (SEK)	127.68	123.09
덴마크	크로네 (DKK)	182.45	189.55
노르웨이	노르웨이크로네 (NOK)	134.37	123.66
러시아	루블 (RUB)	19.32	15.46
헝가리	포린트 (HUF)	3.48	3.7
폴란드	즈워티 (PLN)	289.85	311.45
체코	코루나 (CZK)	55.28	58.87
사우디아라비아	리얄 (SAR)	344.05	347.95
카타르	카타르리얄 (QAR)	353.23	357.78
이스라엘	셰켈 (ILS)	384.46	354.45
요르단	요르단디나르 (JOD)	1822.04	1840.36
쿠웨이트	쿠웨이트디나르 (KWD)	4215.49	4246.97
아랍에미리트	디르함 (AED)	351.74	355.42
튀르키예	리라 (TRY)	78.47	56.56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 (ZAR)	78.96	70.83

## 첨부1

## 필수제출 서류

### □ 업력 3년 이상 기업

#### < 국내소재기업 필수 제출서류 >

준비서류	발급 방법	비고
참가신청서 및 해외진출지원계획서	[첨부 2] 서식 작성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첨부 3] 서식 작성	
대표자 신분증 사본	신분증 앞면만 복사	· 지문정보 제외
사업자등록증명원	홈택스, 정부24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불가 · 신청기간 이내 발급본
주주명부	주주명부 사본 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법인기업만 발급
국세완납증명서	홈택스 발급	· (법인) 법인 1부 · (개인) 대표자 1부 · 신청기간 이내 발급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정부24 발급	· (법인) 법인 1부 · (개인) 대표자 1부 · 신청기간 이내 발급본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2년)	홈택스 발급	· '22년 결산 1부 · '23년 결산 1부
해외 현지 법인(지사) or 업무제휴 파트너사 보유 증빙서류	·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지사 및 파트너사의 현지 사업자등록증) · 양사 날인한 협약서 or 계약서 (파트너사의 경우)	

#### < 해외소재기업 필수 제출서류 >

준비서류	비고
참가신청서 및 해외진출지원계획서	[첨부 2] 서식 작성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첨부 3] 서식 작성
대표자 신분증(여권) 사본	
현지 납세(국세·지방세)증명서	· 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영수증 등으로 대체 가능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p style="text-align: center;"><b>한국어 번역 후 제출</b> (불가피한 경우 영어 번역 가능)</p>
List of shareholders	
Financial Statement (USD) (최근 2년, 해당 국가 신고 자료)	
(한국지사 또는 업무제휴 파트너사 보유시) 관련 증빙서류	

※ 준비서류 1건당 1개의 pdf 파일로 편집하여 제출

## □ 업력 3년 미만 기업

### < 국내소재기업 필수 제출서류 >

준비서류	발급 방법	비고
참가신청서 및 해외진출지원계획서	[첨부 2] 서식 작성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첨부 3] 서식 작성	
대표자 신분증 사본	신분증 앞면만 복사	· 지문정보 제외
사업자등록증명원	홈택스, 정부24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불가 · 신청기간 이내 발급본
주주명부	주주명부 사본 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법인기업만 발급
국세완납증명서	홈택스 발급	· (법인) 법인 1부 · (개인) 대표자 1부 · 신청기간 이내 발급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정부24 발급	· (법인) 법인 1부 · (개인) 대표자 1부 · 신청기간 이내 발급본
지원기업 수출/매출 증빙	[첨부 4] 서식 작성	· 컨설팅 대상(수혜) 기업의 매출/투자 증빙
해외 현지 법인(지사) or 업무제휴 파트너사 보유 증빙서류	·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지사 및 파트너사의 현지 사업자등록증) · 양사 날인한 협약서 or 계약서 (파트너사의 경우)	

### < 해외소재기업 필수 제출서류 >

준비서류	비고
참가신청서 및 해외진출지원계획서	[첨부 2] 서식 작성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첨부 3] 서식 작성
대표자 신분증(여권) 사본	
현지 납세(국세·지방세)증명서	· 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영수증 등으로 대체 가능
지원기업 수출/매출 증빙	[첨부 4] 서식 작성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b>한국어 번역 후 제출</b> (불가피한 경우 영어 번역 가능)
List of shareholders	
(한국지사 또는 업무제휴 파트너사 보유시) 관련 증빙서류	

※ 준비서류 1건당 1개의 pdf 파일로 편집하여 제출



# 해외진출 지원계획서

## I. 신청업체 개요

### 1. 대표자 이력사항

\* 주요경력(근무처, 직책, 근무기간), 최종학력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2. 회사연혁 및 경영실적 지표

#### 가. 회사연혁

.

#### 나. 경영실적 지표

(단위: 국내기업/원, 해외기업/US\$)

No.	지표명	'22년도	'23년도	비고
1	매출액			
2	영업이익			

※ 업력 3년 미만은 빈칸으로 기입

### 3. 주요 사업 분야(Business area & Strategy)

\* 시장조사·정보제공/수출컨설팅/무역/도,소매/물류,창고/제조/홍보/브랜드 개발 등 주요 사업 분야의 실적 및 현황에 대해 기술

### 4. 조직 및 보유인력 현황

#### 가. 조직도 (도형으로 기능 및 계층 구조 표시)

#### 나. 국내조직 인력 현황 (\*해외소재기업의 경우, 국내조직이 없으면 생략)

(단위 : 명)

구분	컨설턴트	행정	영업	기술	기타(통역 등)	계
한국인(교포포함)						
외국인						

\* 1인이 여러 업무를 하는 경우, 주 업무를 기준으로 기재

**다. 해외조직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분	컨설턴트	행정	영업	기술	기타(통역 등)	계
한국인(교포포함)						
외국인						

\* 1인이 여러 업무를 하는 경우, 주 업무를 기준으로 기재

**라. 경력별 인력 구성(상근인력 기준)**

(단위 : 명)

구분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5년 미만	5년 이상	계
국내 조직					
해외 조직					

※ outsourcing 인력 수 : (       ) 명, 전체 업무 중 활용비율 (       ) %

**5. 시설현황(해외조직 포함)**

- 해당 항목에 체크(V)

면적	소유구분		시설구분			
	자가	임차	사무실	전시장	창고	기타
m <sup>2</sup>						

사진1	사진2
사무실	시설1
사진3	사진4
시설2	시설3

\* 3개월 이내의 사진 첨부 필수

## II.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계획

### 1. 컨설팅 수행 가능 유형

중점적으로 수행 가능한 컨설팅 유형 중 해당 항목에 체크(V) (복수 응답)

- ①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수출성약지원 등 수출지원 ( )
- ② 해외 유통망 진출 컨설팅 ( )
- ③ 품목·시장별 공동 진출 ( )
- ④ 기술 제휴 또는 거래 컨설팅 ( )
- ⑤ 인큐베이팅 서비스 ( )
- ⑥ 해외 VC 연계지원, 현지 네트워크 구축 등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 )
- ⑦ 국제조달 또는 UN 조달 컨설팅 ( )
- ⑧ 현지투자지원(투자타당성 검토), 법인설립, M&A 등 현지투자지원 ( )
- ⑨ 데이터 사이언스(UX, ICT 등) 기반 수출지원 컨설팅 ( )
- ⑩ 특허 및 법률 지원 ( )

### 2 지원가능 세부 품목

- \* 주요 지원업종(①기계금속 ②전기전자 ③정보통신(SW) ④섬유화학 ⑤바이오 ⑥의료기기 ⑦건설,환경,에너지 ⑧생활용품 ⑨기타 중 선택) 중 세부 품목이나 제품군 상세 기재 (품목선정 사유 기재)  
(예시) 정보통신(SW)-보안관련 프로그램 / 전기전자-TV 등 가전제품

### 3 해외진출 지원분야별 세부 업무

- \* 지원가능 업무별 프로세스 상세 기술
- \* 개별 프로젝트 관리방안, 사후관리 방안, 용역비 산정 방식 등을 포함

### Ⅲ. 컨설팅 실적 및 참여인력 현황

\* 아래 컨설팅 실적 및 직원 현황은 실태조사시 관련 증빙자료 확인 예정

#### 1. 수출컨설팅 실적 및 성과( '22.7 ~ '24.6) (최대 10건만 기재)

컨설팅분야*	지원업체명	발주기관	컨설팅기간	컨설팅금액	주요내용	주요성과**
수출지원	(주)가나다	(주)중진공	'19.08.01 ~ '20.07.31	30,000천원	법인설립	수출실적 10,000\$, 중국 법인 설립

\* 지원내용 : ① 수출지원 ② 해외유통망진출 ③ 품목별 타겟진출 ④ 기술수출(제휴)  
 ⑤ 인큐베이팅 ⑥ 액셀러레이팅 ⑦ 조달진출 ⑧ 현지투자지원(투자타당성검토 등)  
 ⑨ 데이터사이언스 컨설팅 ⑩ 기타 중 택 1

\*\* 지원성과 : 수출액, 투자유치액, 현지법인설립 등 구체적인 실적 기재

\* 대표적인 성공사례 (별도 첨부 가능)

#### 2. 컨설팅 참여인력 현황 (정규직 직원만 기재)

NO	성명	직위	생년월일	최종학력(학교)	전문분야	컨설팅 경력		비고
						기간	주요 경력	
1	중진공	과장	1979.01.01	석사(중진공 대학원)	법률자문	15년	(주)ABC 수석 컨설턴트	경영지도사
2	글로벌	대리	1989.12.31	학사(중진공 대)	시장조사	7년	글로벌(주) 해외영업부	

위의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신청취소 및 참여제한 등은 물론 그 외 모든 불이익도 당사가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이사):      자필기재      (직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본인은 해외지사화사업 등 연계지원 등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정책자금 융자, 중소기업 기업진단,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치유 또는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진공 홈페이지( <a href="http://www.kosmes.or.kr">http://www.kosmes.or.kr</a> )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a href="http://www.mss.go.kr">http://www.mss.go.kr</a> )에 공개
수집·이용할 항목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매입 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수출액, 국가별 수출액, HS코드, 품목명 등)), 고용에 관한 정보(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융자 및 채권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시설자금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전자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발급, 국제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일,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리스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기업진단,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b>(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b>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 신용조회회사 : 한국평가데이터(주),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 금융회사(국민, 기업은행 등) ▶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주관증권사, 자산관리사, 신용공여기관 업무수탁기관, SFC,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제공·조회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정책자금 융자, 중소기업 기업진단,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회사, 보증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등) ·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투회사,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 매출·매입처 등),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수출액, 국가별 수출액, HS코드, 품목명 등) · 고용에 관한 정보(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채무 전액상환 등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기업진단,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조회회사 : 한국평가데이터(주),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li> <li>▶ 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연대보증인</li> <li>▶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주관증권사, 자산관리자, 신용공여기관, 업무수탁기관, SPC,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li> <li>▶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이익공유형 대출의 영업이익 적정성 점검용역 수행 회계법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 융자취급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IBK기업, Sh수협, 전북, DGB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제일, 한국씨티, NH농협, KB국민, 신한, 하나, 한국수출입, KDB산업은행 등)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li> </ul>
제공받는 자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 보증기관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li> <li>▶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li> <li>▶ 연대보증인 : 보증인 보호를 위한 대출계약 체결여부 판단 및 유지, 관리, 이행</li> <li>▶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이익공유형 대출의 영업이익 적정성 점검용역 수행 회계법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중소기업 정책자금·기업진단·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li> <li>▶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 융자취급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IBK기업, Sh수협, 전북, DGB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제일, 한국씨티, NH농협, KB국민, 신한, 하나, 한국수출입, KDB산업은행 등)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li> </ul>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매입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li> <li>· 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li> <li>· 기타 신용정보(정책자금 융자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융자 및 채권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li> </ul> </li> <li>▶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식별정보, 대출정보 등 자료</li> <li>▶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이익공유형 대출의 영업이익 적정성 점검용역 수행 회계법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li> <li>▶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연대보증인 등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li> </ul>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리스크 관리 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기업진단,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회 목적	▶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사업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식별정보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수출액, 국가별 수출액, HS코드, 품목명 등) ▶고용에 관한 정보(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부동산정보,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리스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 기업진단,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b>(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b>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b>(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b>

**5.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 대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
제공 목적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 사업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사업 안내 등
제공 정보의 항목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기업명, 지원사업명, 대표자명, 신청일자, 승인일자, 신청금액, 승인금액, 지원일자, 지원금액, 기업주소, 기업대표전화번호, 기업대표이메일, 주생산물 등
제공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해당 지원 사업 참여 종료 후 5년간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해당 지원 사업 참여 종료 후 5년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리스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중소기업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소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연계 지원 정보 미제공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제공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중소기업부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제공된 정보를 중소기업부가 제공 대상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b>(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b>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선택사항)

○ 본인은 아래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중진공의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재된 행정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이용 사무 (이용목적)	담당자 확인 정보	동의여부 (해당란에 √ 표시)
해외지사화사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벤처기업확인증, 메인비즈니스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특허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서, 건축허가서, 건설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선박원부, 선적증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장애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납부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b>동의함 <input type="checkbox"/></b> <b>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b>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에 관한 사항(선택사항)

○ 본인은 중진공의 정책자금 용자, 채권관리, 기업진단,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기장대행 세무사(회계사)가 세무회계자료를 중진공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데 동의합니다.

1. 전송세무회계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소득금액증명
2. 정책자금 상환시까지 중진공에서 기장대행 세무사(회계사) 또는 자체기장의 본인에게 요청한 때에는, 본인의 별도 동의 없이 세무회계자료를 전송하는데 동의합니다.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금융회사가 보유한 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선택사항)

금융회사가 보유한 귀사(귀하)에 대한 신용정보를 중진공이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금융회사가 본인의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조회) 대상 기관	- 대출보유기관 및 금융회사 * 거래가 있는 금융회사 등을 모두 적어주세요
제공(조회)의 목적	-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중소기업 정책자금·기업진단·연계지원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조회)할 정보의 항목	- 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연락처 -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대출, 보증, 담보, 연체 등에 대한 각종 일자, 금액, 종류, 용도, 물건명, 수량, 소유자, 순위, 설정자, 연체여부, 부도여부
제공(조회)할 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정보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 보유 신용정보 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권한 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금융회사에 위와 같이 본인의 대출 등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상거래 종료기업 : 개인신용정보 보안조치 해제 신청에 관한 사항(선택사항)

○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중진공에 보안조치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복구 신청에 동의합니다.

요청사유	- 신규 대출 신청, 세무서 과세자료 제출, 개인 분쟁해결 기타( ) * 필요시 그 외 상거래 재개 신청사유를 적어주세요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	--

동의의 효력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

-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종료 시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단, 계약 종료 후에도 금융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위 기관의 리스크 관리 업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됩니다
- 해당 행정정보이용, 금융회사가 보유한 신용정보,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	(인)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 ) -

-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진공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중소기업 해외지사화사업 등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금융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판단을 위한 자료, 정책자금 융자, 중소기업 기업진단, 연계지원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신용거래정보(개설·발급정보, 대출정보(개인, 카드, 보험계약), 개인채무보증정보, 기업신용공여정보, 복수카드정보, 사고회원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관련인정보),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기타 신용정보(공공정보, 세금체납정보, 사회보험료 체납 정보, 채무조정정보, 개인신용평점, 정책자금융자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융자 및 채권관리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정보),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li> <li>▶ 선택적 정보 : 고유식별정보(운전면허번호),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학력, 수상경력, 주거현황, 주요경력, 자격사항)</li> <li>* 중진공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8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③항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li> </ul>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리스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책자금 융자, 기업진단, 연계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li> <li>▶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래 조건 및 지원에 일부 혜택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li> </ul>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선택적 정보 :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조회회사 : 한국평가데이터(주),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li> <li>▶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li> <li>▶ 스캐일업금융 참여기관(주관증권사, 자산관리자, 신용공여기관, 업무수탁기관, SPC,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li> <li>▶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기술가치평가기관(송연국제특허법률사무소, 코디특허법률사무소, 청어람특허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화음, 한강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KBK, 해울특허법률사무소, 바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센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도담, 수안 특허법인, 특허법인 이룸리온, 인베스트 아이피 주식회사),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금융회사,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li> </ul>
제공·조회 목적	▶ 금융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판단을 위한 자료, 정책자금 융자, 중소기업 기업진단, 연계지원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금융회사, 스캐일업금융 참여기관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식별정보(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신용거래 정보(개설·발급정보, 대출정보(개인, 카드, 보험계약), 개인채무보증정보, 기업신용공여정보, 복수카드정보, 사고회원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관련인정보),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타 신용정보(공공정보, 세금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체납 정보, 채무조정정보, 개인신용평점, 정책자금융자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융자 및 채권관리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정보),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li> </ul> </li> <li>▶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기술가치평가기관(송연국제특허법률사무소, 코디특허법률사무소, 청어람특허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화음, 한강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KBK, 해울특허법률사무소, 바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센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도담, 수안 특허법인, 특허법인 이룸리온, 인베스트 아이피 주식회사),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창투회사,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스캐일업금융 참여기관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식별정보(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li> <li>·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li> <li>·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li> </ul> </li> <li>▶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li> </ul> </li> </ul>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금융)거래종료일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 기업진단, 연계지원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고유식별정보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조회회사 : 한국평가데이터(주),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li> <li>▶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li> <li>▶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주관증권사, 자산관리자, 신용공여기관, 업무수탁기관, SFC,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 연대보증인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li> <li>▶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기술가치평가기관(송연국제특허법률사무소, 코디특허법률사무소, 청어람특허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화음, 한강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KBK, 해울특허법률사무소, 바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센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도담, 수안 특허법인, 특허법인 이룸리온, 인베스트 아이피 주식회사),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 한국모태펀드 출자조합의 운용사,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출자조합의 운용사, 신기술금융사, 창업기획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이익공유형 대출의 영업이익 적정성 점검용역 수행 회계법인,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 금융거래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 융자취급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한국산업, 중소기업, 국민, NH농협, 우리, 신한, SC제일, 한국씨티, 한국수출입,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수협은행)</li> </ul>
제공받는 자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활용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li> <li>▶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li> <li>▶ 연대보증인 : 보증인 보호를 위한 대출계약 체결여부 판단 및 유지, 관리, 이행</li> <li>▶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기술가치평가기관(송연국제특허법률사무소, 코디특허법률사무소, 청어람특허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화음, 한강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KBK, 해울특허법률사무소, 바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센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도담, 수안 특허법인, 특허법인 이룸리온, 인베스트 아이피 주식회사),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소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이익공유형 대출의 영업이익 적정성 점검용역 수행 회계법인,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중소기업 정책자금·기업진단·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li> <li>▶ 중진공과 금융거래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 융자취급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한국산업, 중소기업, 국민, NH농협, 우리, 신한, SC제일, 한국씨티, 한국수출입,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수협은행)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활용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li> </ul>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식별정보(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li> <li>· 신용거래 정보(개설·발급정보, 대출정보(개인, 카드, 보험계약), 개인채무보증정보, 기업신용공여정보, 복수카드 정보, 사고회원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관련인정보)</li> <li>· 기타 신용정보(공공정보, 세금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체납 정보, 채무조정정보, 개인신용평점, 정책자금 용자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용자 및 채권관리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정보,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li> </ul> </li> <li>▶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li> <li>▶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기술가치평가기관(송연국제특허법률사무소, 코디특허법률사무소, 청어람특허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화음, 한강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KBK, 해울특허법률사무소, 바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센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도담, 수안 특허법인, 특허법인 이룸리온, 인베스트 아이피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중소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이익공유형 대출의 영업이익 적정성 점검용역 수행 회계법인,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개인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공단지원현황), 영업상황, 재무상황)</li> <li>▶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연대보증인 : 개인식별정보(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신용거래 정보(개설·발급정보, 대출정보(개인, 카드, 보험계약), 개인채무보증정보, 기업신용공여정보, 복수카드정보, 사고회원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관련인정보),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li> </ul>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리스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 기업진단, 연계지원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공공기관,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회 목적	▶중진공 정책자금 용자사업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식별정보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부동산정보(지적전산정보자료,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정책지원내역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리스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 채권관리, 기업진단, 연계지원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공공기관, 은행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 5.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정보 제3차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 대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
제공 목적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 사업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사업 안내 등
제공 정보의 항목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기업명, 지원사업명, 대표자명, 신청일자, 승인일자, 신청금액, 승인금액, 지원일자, 지원금액, 기업주소, 기업대표전화번호, 기업대표이메일, 주생산물 등
제공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해당 지원 사업 참여 종료 후 5년간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해당 지원 사업 참여 종료 후 5년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리스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중소기업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소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연계지원 정보 미제공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제공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중소기업부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제공된 정보를 중소기업부가 제공 대상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선택사항)

- 본인은 아래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중진공의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재된 행정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이용 사무 (이용목적)	담당자 확인 정보	동의여부 (해당란에 √ 표시)
해외지사화사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벤처기업확인증,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특허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서, 건축허가서, 건설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선박원부, 선적증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장애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에 관한 사항(선택사항)

- 본인은 중진공의 해외지사화사업 등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기장대행 세무사(회계사)가 세무회계자료를 중진공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데 동의합니다.

1. 전송세무회계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소득금액증명

2. 정책자금 상환시까지 중진공에서 기장대행 세무사(회계사) 또는 자체기장의 본인에게 요청한 때에는, 본인의 별도 동의 없이 세무회계자료를 전송하는데 동의합니다.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금융회사가 보유한 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선택사항)**

금융회사가 보유한 귀사(귀하)에 대한 신용정보를 중진공이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금융회사가 본인의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조회) 대상 기관	- 대출보유기관 및 금융회사 * 거래가 있는 금융회사 등을 모두 적어주세요
제공(조회)의 목적	-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중소기업 정책자금·기업진단·연계지원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조회)할 정보의 항목	- 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연락처 -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대출, 보증, 담보, 연체 등에 대한 각종 일자, 금액, 종류, 용도, 물건명, 수량, 소유자, 순위, 설정자, 연체여부, 부도여부)
제공(조회)할 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정보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권한 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금융회사에 위와 같이 본인의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상거래 종료기업 : 개인신용정보 보안조치 해제 신청에 관한 사항(선택사항)**

○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중진공에 보안조치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복구 신청에 동의합니다.

요청사유	- 신규 대출 신청, 세무서 과세자료 제출, 개인 분쟁해결 기타( ) * 필요시 그 외 상거래 재개 신청사유를 적어주세요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	--

**동의를 효력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

○ 본 동의를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종료 시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동意的 효력이 유지됩니다. 단, 계약 종료 후에도 금융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위 기관의 리스크 관리 업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됩니다

○ 해당 행정정보이용, 금융회사가 보유한 신용정보,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기업체명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동 기록은 타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진공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첨부4****컨설팅 수행실적(업력 3년 미만-신규 신청)** **컨설팅 지원기업 개요**

기업명		대표이사	
소재지		대상국가	
설립연도		수출개시연도	
매출액		상시근로자수	
기업규모		업종	
주생산품		주수출품	
담당자	(성명/직위)	(유선)	
	(이메일)		

 **컨설팅 내용**

내용	(300자 내외로 요약, 필요 시 붙임문서로 제출)
----	------------------------------

 **컨설팅 성과 증빙**

증빙자료
<p>(컨설팅으로 인해 발생한 투자/수출 증빙자료 첨부)</p> <p>수출 증빙 : 지원기업의 공문/세관의 수출신고필증 등 공문 또는 관련기관의 확인서류만 인정  투자 증빙 : 투자유치 계약서, 투자 확인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등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만 인정</p> <p>※증빙서류의 실적인 금액부분은 형광펜·밑줄 등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서류가 많을 경우 붙임문서로 제출하되, 하나의 pdf로 제출</p>

- ※ 컨설팅 지원기업이 여러 개(사)일 경우, 지원기업 당 1개로 하여 여러 장 작성
- ※ 제출 서류가 많더라도 pdf형태로, 파일 1개로 편집하여 제출

## ① 해외지사화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8조(수행사 선정)** ① 해외지사화사업 수행사는 각 운영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의거해 모집·선정한다.

② 수행사는 중진공의 해외민간네트워크, OKTA의 글로벌마케터 등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행사는 중진공의 해외민간네트워크 및 OKTA의 글로벌마케터 모두로부터 선정 통보를 받은 경우, 두 운영기관 중 선택하여 선정 취소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행사로 선정된 이후에도 제3항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수행사 선정 및 참여 사업을 취소하고, 기 수입한 사업비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환수조치 및 향후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 ② 해외민간네트워크 운영지침

**제4조(민간네트워크)** 민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업무 관련 각종 지침의 숙지와 준수
2. 공정하고 투명한 정산 및 회계 처리
3. 서비스 지원내용에 의거한 성실한 서비스 이행 및 성과창출
4. 운영기관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세미나 참석
5. 사업 완료 후 운영기관이 요구하는 사항과 자료제출 요구 등에 협조
6. 참여기업과의 개별 계약에 따른 용역제공
7. 운영기관에서 요청하는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현지 시장조사, 산업별 동향보고, 바이어 발굴, 해외전시회 및 상담회 참가지원 등 관련 용역수행
8. 정해진 기간 내 참여기업 및 운영기관으로의 월간, 중간, 최종 용역 보고서 제출 및 보완
9.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애로사항 발생 시 보고
10.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신청자격 및 제한)** ① 민간네트워크로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은 해외민간네트워크 모집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민간네트워크로 신청할 수 없다.

1.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의·법정관리·기업 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2. 휴·폐업중인 기업
3. 세금 체납 중인 기업(다만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4. 민간네트워크로 지정되어 활동하면서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지사화사업 수행지침」 제28조의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단, 특수관계 기업은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지사화사업 수행지침」 제2조의 기준을 준용함
5. 정부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단, 특수관계 기업은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지사화사업 수행지침」 제2조의 기준을 준용함
6. 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참가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단, 특수관계 기업은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지사화사업 수행지침」 제2조의 기준을 준용함

③ 운영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민간네트워크로 선정된 기업이나 선정 후 제

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언제라도 민간네트워크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제 조치에 관한 절차는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지사화사업 수행지침」 제27조에 따른다.

**제14조(자격 박탈)** 운영기관은 민간네트워크가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지사화사업 수행지침」 제25조에 따른 제제조치를 받은 경우, 민간네트워크 지정자격을 박탈하고 운영기관의 수출지원 사업 참여 제한의 제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때, 제제조치는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지사화사업 수행지침」 제25조부터 제28조에 따른다.

### ③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지사화사업 수행지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특수관계 기업”이란 두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가 동일한 경우

다.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제제조치 등)** ① 운영기관은 별표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행사 또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제7조에 따른 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 제소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이미 승인된 지원금의 지급금지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재차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채권추심을 실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재를 하는 때에는 제제사유의 중대성, 부정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제제사유별 참여제한의 기준, 제2항에 따른 환수의 기준 및 범위는 별표에 따른다.

⑤ 운영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제제조치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참여제한, 환수조치, 제제부가금 등 부과, 강제징수, 명단 등의 공표 등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 (중략)

**제26조(운영기관의 조사 및 협조)** ① 운영기관은 신고 등에 의하여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사유를 알게 된 경우 그 진위여부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진술이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신고자인 참여기업 또는 수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제제조치 절차 및 이의신청)** ① 운영기관은 제26조에 따른 조사 결과 참여기업 또는 수행사에 대한 제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정행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제여부 및 제제수준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중략)

⑥ 운영기관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동 사업 및 운영기관에서 추진하는 수출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징계수위가 사업 참여제한으로 확정되면,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 중인 서비스의 계속 진행·중지 등은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자격 박탈 및 참여 제한)** 운영기관은 수행사 또는 참여기업이 제25조에 따른 제제조치를 받은 경우, 수행사 지정자격을 박탈하고 운영기관의 수출지원 사업 참여 제한의 제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때, 제제조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